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한도 상향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한도 상향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3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한도 상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16조(벌칙) ----- ----- ----- <u>5천만원</u> <u>이하의 벌금</u>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구인자에 대해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를 목적 등으로 하는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1)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허위 채용광고를 이용한 구직자 개인정보 탈취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바, 거짓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허위 채용광고로 수집한 구직자 개인정보가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이에 개정안은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근 지능화된 범죄로 인해 거짓 채용광고로 인한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 시 구직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업안정법」에서도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개정안과 같이 벌금 액수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2) “취준생을 울리는 취업사기 잘 알고 예방하자”(전주일보, 2019.9.16.)

3)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으로 상향하는 것은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채용절차법과 직업안정법 비교]

구분	채용절차법	직업안정법
적용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공무원 제외)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거짓채용 광고의 정의	· 구직자의 아이디어 수집 목적의 광고 · 사업장 홍보목적의 광고 · 기타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예: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등)	·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국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거짓 채용광고로 인해 채용절차에서 구직자들이 입을

4) 제45조(벌정형) ③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벌금액의 적정수준을 정한다.

1.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최고액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수 있는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채용절차법이 30인 이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채용절차상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업자 등을 주요 규율 대상으로 하여 직업소개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목적이 있고, 채용절차법과 직업안정법에서 거짓채용광고로 정의하여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절차법상 거짓채용광고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직업안정법과 처벌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